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0.(화) 08:00 |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 (지 면) 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 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
-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했다. 이에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6.5.19.)되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대학도 해당 겸직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분야,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이다.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 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책임자	과장	조훈희 (044-203-6830)
		담당자	사무관	김기형 (044-203-69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외국대학의 교원을 국내 대학으로 초빙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3.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에 소재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

2.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직허가의 필요성

2. 직무상 비밀 준수의무 부과의 필요성

3. 교원의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6(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에 소재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 2. 해당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직허가의 필요성 2.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부과의 필요성 3. 교원의 연구개발성과 및 관

	련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38